

안양대학교 대학원 학칙

제 6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

제31조(연구과정) ①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시행하는 강의를 청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연구생은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청강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연구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학기당 학점의 허용한도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④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⑤연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취득학점의 1/2을 인정할 수 있다.

⑥이외의 연구생에 대한 규정은 「연구생에 관한 규정」으로 따로 정한다.

제32조(공개강좌)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①특수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,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②공개강좌명, 교과과목, 수강인원 및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발표한다.

③개설된 공개강좌는 「운영시행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다.